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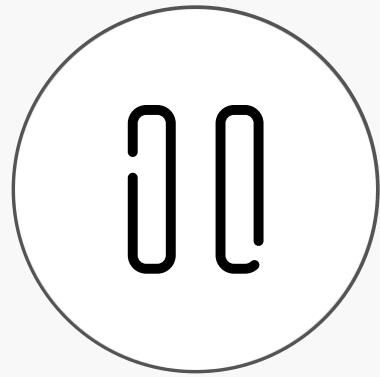
공법 제1문의 3

공법연습 2023511047 최지영



탄핵소추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 및 특별사면권 법률 제한의 위헌성 심사

01 사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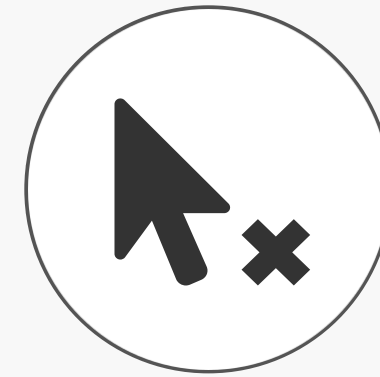
대통령 甲의 탄핵소추 및 권한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 및 적법 송달되어
대통령 甲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인 계속 중인 상황



사면법 개정 법률안 국회 의결

국회는 특정경제범죄법 (특경법) 위반 수형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 후 정부로 이송



국무총리 乙의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 乙이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면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로 환부하며 재의 요구

01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대행 범위 -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 권한정지 상황에서 국무총리 乙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01

학설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상유지설 (소극적 권한설)

- 현상유지 업무에 국한되며 법률안 거부권과 같은 정무적·외교적 고도의 정치 행위는 불가하다는 견해
- 민주적 정당성
 - 정당성 부족
 - 책임 정치의 부재
 - 차기 권력에 대한 존중

전면대행설 (적극적 권한설)

- 헌법상 한계가 없는 한 전면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 국정공백 방지
 - 국민 기능 마비 방지 (국가 계속성의 원칙)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실질적 이익의 균형

01 소결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 제출권과는 달리
현상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음

사면권의 행사가
권한대행자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는지 불확실함

당장 사면이 이루어질 것도
아니므로 개정 법률의 통과가
긴급한 것도 아님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사면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허용된다

02

거부사유의 당부(當否)

사면법 개정안 (특경법 위반자 특별사면 전면 금지)이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거부사유 정당성) 여부

02

사면권의 헌법적 성격

헌법 제79조의 법률 유보

- 제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

한계의 내재성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남용
-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위협할 정도의 행사 가능성

▶ **사면권의 제한 필요성이 있고 그 제한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02

사면법 개정안 합헌성 심사

목적의 정당성

특경법 위반자를 엄벌하여
건전한 경제 윤리를 확립

-> 정당함

수단의 적합성

특별법으로 무겁게 처벌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임의로
풀어주는 것을 법률로
차단함으로써, 국회가 만든
법률의 무력화를 방지

-> 적합함

침해의 최소성

- 국민 경제를 흔든 '특경법 위반
자'라는 특정 중범죄군만 제한

- 사면권의 본질을 박탈하는 것
이 아닌, 합리적인 법률적 기준
설정에 불과

-> 최소한의 제한

법익의 균형성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 확보 &
부패 근절 및 공정사회 실현

(공익)

V

사면권 행사의 자유

(편익)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03 사안의 해결

국무총리 乙은 헌법 제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면법 개정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고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부당하다

Q & A

감사합니다